# 교원업적평가규정

2015.8.17. 개정
1999.10.1. 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**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게 관리·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11.23., 2015.8.17.>

**제2조**(적용범위) 교원업적관리·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. <개정 2015.8.17.>

**제3조**(평가영역) 이 규정에서 교원업적(이하 “업적”이라 한다) 평가영역은 학과평가와 개인평가 영역의 활동실적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**제4조**(업적관리·평가대상) 업적관리·평가대상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17.>

## 제2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<개정 2015.8.17.>

**제5조**(교원업적평가위원회) ① 업적을 관리·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5.8.17.>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, 간사 1인을 둔다. <개정 2008.9.1., 2009.11.23., 2010.2.17., 2015.8.17.>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06.6.1.>

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업적관리·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<삭제 2010.2.17.>
3. 관련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10.2.17.>
5. <삭제 2010.2.17.>
6. <삭제 2010.2.17.>
7. 기타 업적평가에 관련된 사항 <개정 2010.2.17.>

⑤ <개정 2010.2.17.><삭제 2015.8.17.>

**제6조**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③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## 제3장 업적관리·평가

**제7조**(평가주기) 업적평가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되, 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0.2.17.>

**제8조**(평가기준) <개정 2015.8.17.><삭제 2015.8.17.>

① 세부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따른다. <개정2010.2.17., 2015.8.17.>

② <개정 2010.2.17.><삭제 2015.8.17.>

1. <개정 2010.2.17.><삭제 2015.8.17.>[제9조로 이동<2015.8.17.>]

2. 신설학과나 학과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간 중 해당실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, 변경 전(후) 소속 학과 점수를 반영한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**제9조**(평가대상 제외)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원업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0.2.17.>

1. <개정 2011.8.3.><삭제 2015.8.17.>

2. 총장이 정하는 학교, 학부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3. 임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<개정 2010.2.17.>

4. 6개월 이상 출장, 산업체 연수, 해외연수, 국내·외 파견, 연구(수)년 등의 경우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[제8조에서 이동<2015.8.17.>]

**제10조**(평가절차) ① 전임교원은 평가 기간의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마감 기한까지 해당 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, 그 결과는 개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17.>

③ 위원장은 확정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09.11.23.>

**제11조**(재심 청구) 해당 교원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1. 해당 교원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개별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17.>

2. 위원회는 재심 시 경우에 따라 본인의 의견 진술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17.>

3. <신설 2010.2.17.><삭제 2015.8.17.>

**제12조**(평가활용) 평가결과는 본 대학 내부 규정에 의해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,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17.>

**제13조**(업적자료 관리) 제출된 업적자료는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4조**(비밀 유지) 업적 평가 결과에 대한 개인별 사항은 유포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. 교원업적 결과(자료)를 유포 또는 누설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17.>

**제15조**(학교 발전 기여도 평가)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따른 실적 이외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인정항목과 배점을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17., 2015.8.17.>

**제16조** <삭제 2010.1.2.17.>

# 제4장 보칙

**제17조**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9.11.23.>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